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단2482(본소), 2021가단109659(반소)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변경전 : D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E

변 경 전 주 소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837,990원,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1,207,761원,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1,240,274원1) 을 각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배당액 5,589,235원을 35,875,2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J(K생) 사이에 2020. 3. 13. 작성한 법무법인 L 증서 2020년 제267호 공정증서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J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J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13. J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20년 제26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30.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J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89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20. 7.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어 2020. 8.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변경 전: M 주식회사2),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1995. 9. 12. 채무자를 J(상호: N의원)으로, 제3채무자를 O연합회로 하여, 청구채권을 채무금 80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채권자 청구금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5카단6645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 C은 J과 P에 대하여

의료기계 임대계약상 상환받지 못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1. 4. 27. 'J와 P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11049호), 2011. 8. 25. J과 P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64284호).

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은 1995. 10.경 J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5카단6806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J의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하여 2021. 6. 21.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30582호).

마.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7. 12. 7.경 채무자를 J,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59224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의료보험금(의료보험 진료비) 반환청구 채권 중 현재의 잔액과 앞으로 지급받을 의료보험금(의료보험 진료비) 중 청구금액 433,253,69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타채36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고,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2221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공단에 가입하여 환자에게 적용되는 약제비 및 의료보험수가금액에 비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국민건강보험보험료 지급액 중 청구금액 70,851,3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16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J은 아래와 같이 1992. 7. 29. S의원 개설 후 1993. 6. 6. 폐업, 1993. 7. 2. T의원 개설 후 1994. 7. 1. 폐업, 1994. 12. 9. N의원 개설 후 1995. 8. 10. 폐업, 2009. 12. 16. U의원 개설 후 2010. 1. 20. 폐업, 2020. 6. 26. V의원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개설일	폐업일	상호	소재지
1992. 7. 29.	1993. 6. 6.	S 의원	충청북도 아산시
1993. 7. 2.	1994. 7. 1.	T 의원	충청북도 음성군
1994. 12. 9.	1995. 8. 10.	N 의원	서울시 강남구
2009. 12. 16.	2010. 1. 20.	U 의원	경기도 화성시
2020. 6. 26.	현재	V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J에 대한 요양급여채무를 공탁(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금2439호)하였고, 2021. 4. 22.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17,837,99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E은행에게 1,207,761원을, 추심권자인 피고 F(소관: H)에게 9,660,468원을, 추심권자인 피고 F(소관: I)에게 1,579,806원을,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589,23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원고는 2021. 4. 22.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의 J에 대한 채권압류 내지 채권가압류는 J이 V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의료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E은행의 J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E은행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C, F

가) 피고 C

원고의 J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일 뿐이다. 또한 피고 C의 J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J의 V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의료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친다.

나) 피고 F

피고 F은 자연인인 J을 채무자로 하여 J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을 뿐이고 J이 운영한 의료기관을 채무자로 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J이 운영한 의료기관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F이 받은 각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원고의 J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채권은 부존재하거나 허위채권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가.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 6, 8, 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3. 20. J의 처 W의 계좌로 9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는 X에게 J의 V의원 실내 인테리어공사비 123,358,567원을 2020. 10. 말일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J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J에게 218,358,567(= 95,000,000원 + 123,358,56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F은 원고의 J에 대한 위 채권이 원고와 J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20. 3. 13. 공정증서에 기재된 250,000,000원을 J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인 2020. 3. 20.경 그 중 일부인 95,000,000원을 지급한 점, J이 아닌 J의 처 명의의 계좌에 이를 지급한 점, 실내 인테리어공사비와 관련하여 X에게 실제로 현재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J의 처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 J이 운영하는 V의원의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X이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X에게 그 인테리어비 상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X에게 인테리어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J에 대한 위 채권이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E은행의 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피고 E은행의 J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2021. 6. 21. 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은행에 대한 배당액 1,207,76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 피고 C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C의 J에 대한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J의 V의원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채권자 청구금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지급청구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문언에 의하면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J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장래의 채권에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J의 V의원 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는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장래의 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이 V의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피고 C의 채권가압류 이후에 새로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으로서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J이 1992. 7. 29. S의원 개설 후 1993. 6. 6. 폐업, 1993. 7. 2. T의원 개설 후 1994. 7. 1. 폐업, 1994. 12. 9. N의원(서울시 강남구) 개설 후 1995. 8. 10. 폐업, 2009. 12. 16. U의원(경기도 화성시) 개설 후 2010. 1. 20. 폐업, 2020. 6. 26. V의원(광주광역시 남구)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실, J이 2004. 3. 1.경부터 2020. 6. 16.경까지 타 병원들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과거 J이 운영한 N의원과 V의원 사이에는 15년 정도, U의원과 V의원 사이에는 10년 정도의 긴 간격이 있는 점, J이 15년 동안(U의원 운영기간 제외) 타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한 점, V의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어 과거 J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먼 거리에 위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재 J이 운영하는 V의원은 과거 J이 운영했던 의료기관들과 시간적, 장소적 단절이 명백하여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J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과 V의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J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은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 F에 관한 판단

피고 F의 J에 대한 각 채권압류에 관하여도 위 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이 V의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피고 F의 채권압류 이후에 새로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으로서 위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피고 F의 각 채권압류결정상의 채무자에는 'J'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의원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837,990원, 피고 E은행에 대한 배당액 1,207,761원, 피고 F (소관 H)에 대한 배당액 9,660,468원, 피고 F(소관 I)에 대한 배당액 1,579,80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89,235원을 35,875,26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C

J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 채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원고는 J이 개원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J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오래 전의 채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J의 차용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J의 위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J의 사해행위를 알 수 없었다.

나. 관련법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부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J은 원고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일인 2020. 3. 13.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2020. 3. 13.경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J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인 2020. 3. 20.경 J의 처 W의 계좌로 95,0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는 J이 V의원을 개원하기 위한 인테리어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X에게 위 인테리어비 123,358,597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탁금은 J이 V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탁한 것인 점, 피고 C의 J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채무부담행위로부터 약 16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기간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채권이고, 피고 C이 주장하는 J의 다른 채무들도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기간 변제되지 아니한 것들인 점, J이 원고로부터 위 채무부담행위로 돈을 차용하여 V의원을 개원함으로써 진료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피고 C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도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J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부담행위가 J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채무부담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J의 원고에 대한 2020. 3. 13.자 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남

[별지]

채권의 표시

2020.08.08.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20 타채 589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전의 결정에 따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금이억사천사백사십일만칠백육십오원(금244,410,765원)의 ※전부금 청구채권.

※ 전부금 : 채무자 이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중 금2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이상-

- 1) 피고 F 주식회사(소관 H)에 대한 배당액 9,660,468원 + 피고 F 주식회사(소관 I)에 대한 배당액 1,579,806원

- 2) M 주식회사가 Q 주식회사로, 다시 R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된 후 D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피고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